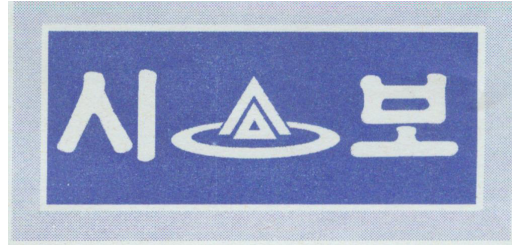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510호 2013. 11. 1.(금)

【조 례】

제885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886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4
제887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	9
제888호	공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13
제88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890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891호	공주시	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34
제892호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39
제893호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894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95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896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897호	공주시	오픈마켓 고타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89

【규 칙】

제450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93
-------	-----	----------------------	----

【훈 령】

제221호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110
제222호	공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	112
제223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122

【예 규】

제224호	공주시	행정 간행물 발간·등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27
제225호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 폐지지침	129

【고 시】

제2013-123호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30
제2013-124호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고시	148
제2013-1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0

【공 고】

제2013-1374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재분양 공고	153
제2013-1376호	소하천 폐지에 관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160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85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회 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각 위원회”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비)”를 “(실비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공무원”을 “공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출

석”을 “참석”으로, “범위안에서 일비를”을 “범위에서 수당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주시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각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u></p> <p>제3조(일비)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4조(여비)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조(목적) ----- <u>공주시 각종 위원회</u> <u>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 지급에</u> ----- -----.</p> <p>제2조(적용범위) <u>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u> ----- -----.</p> <p>제3조(실비변상) ① <u>공주시 소속 공무원----- 참석----- 범위에서 수당 등을</u> ----- -.</p> <p>② <u>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86호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으로 한다.

제2조(「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조(「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제4조(「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19세”를 “18세”로, “20세”를 “19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응진문화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상자 추천) ① ~ ⑤ (생략)</p> <p>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u></p> <p>2. ~ 4. (생략)</p>	<p>제7조(수상자 추천)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p> <p>1. <u>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인</u> -----</p> <p>2. ~ 4.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생략)</p> <p>2. <u>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p> <p>3. ~ 5. (생략)</p>	<p>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u> ----- -----</p> <p>3. ~ 5.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u>금치산자</u></p> <p>2. <u>한정치산자</u></p> <p>3. (생략)</p>	<p>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 ----- -----.</p> <p>1. <u>피한정후견인</u></p> <p>2. <u>피성년후견인</u></p> <p>3.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관람자의 구분중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u>19세</u>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 “군인”이란</p>	<p>제2조(정의)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 ----- <u>18세</u> ----- ----- -----</p>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 19세 -----

----- .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87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공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
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되,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
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④ 공개모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징계 전력이 있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입한 경우

⑥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입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직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시(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항 등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매년 말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
3. 고문변호사 외 타 변호사 소송사건 수임 건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자문 실적부

《 변호사명 : ○○○ 》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구분		연월일	회시내용	

※ 자문구분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가급적 문서(서면)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88호

공주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고객인 공주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공주시민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과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 개인·단체·기업체 및 관계 기관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시정의 주요정책과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제정 및 개정)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현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고객의 입장에서 직업·산업분야·사회부문 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 제정 부서의 장은 미리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할 수 있다.

제5조(현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현장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

5.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참고하여 서비스의 개정에 반영한다.

제6조(현장의 내용구성) ① 현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2.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3. 업무내용에 대한 이행 기준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5.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7. 고객의 협조사항 등
- ② 현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현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현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합리적인 현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의 제정 및 개정의 심사
2. 현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3. 현장 관련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4. 그 밖에 현장과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현장의 이행) ① 현장 운영부서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이행 중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현장을 준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서의 장은 현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을 구술·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객불만 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

제11조(보상조치) ① 고객 보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적 장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그 밖에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부서장은 즉시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10,000 원에 상응하는 보상금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현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는 현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우대조치) 시장은 현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요청)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주시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 및 운영된 행정서비스현장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8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건진료직렬(별정직, 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월 지 급 액	비 고
보건진료소 근무자	25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등 :</u> <u>별표 4의 지급 구분표</u></p>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0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수행하기”를 “하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공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으로,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3조”를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 1

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정책결정기구로서”를 “정책결정기구로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를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로, “구성하고”를 “구성하고,”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조직·운영에”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를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로,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1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로, “회계년도 2월말”을 “회계연도 2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2항의”로, “회계년”을 “회계연”으로, “하며, 이를”을 “하며,”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을 “다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하여 그 공헌”을 “공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시장은”을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를 “자원봉사자의”로, “공제료를”를 “공제료를 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를 “다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를 “자원봉사자의”로 한다.

제18조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1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 -----.</p> <p>1. “자원봉사활동”이란 ----- ----- ----- ----- -----.</p> <p>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란 ----- ----- 하거나 ----- ----- -----.</p> <p>4. “자원봉사센터”란 ----- ----- ----- 하기 ----- 따라 ----- -----.</p>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마련-----

-----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 마련-----

-----공주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 .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

③ -----

----- 갖춘 사람 -----

----- 10명 이상 20명

이내-----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
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
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
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
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
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
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
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센터장을 선
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 비영리법인에 -----
----- . -----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

----- 인정하면 -----
-.

② -----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

-----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 법인으로 -----
-----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

-----.

④ ----- 센터장 1명 -----

-----.

⑤ -----
정책결정기구로써 -----
----- . ----- 법인으로 -----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 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⑦ (생략)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20명 이내로 하되, -----

--- 구성하고, -----
----- 사람으로 ----.

⑦ (현행과 같음)

⑧ ----- 조직·운영에 -----
-----.

제9조(센터의 지원) -----

-- 범위-----.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모든 사항-----.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
----- 해당 회계연도 시작 1월 전-----
----- . --- 변경하는 경우-----.

② -----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 회계연도 2월말-----

하여야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생략)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과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 제2항의 ----- 회계연----- 하며, -----.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헌-----.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할 -----.

1. ~ 4. (생략)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 ~ 4. (현행과 같음)

5. --- 밖에 -----

제15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
----- 자원봉사자-
----- 등에 ---
-----.

제17조(보험가입) ① -----
-----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

-----.

② ----- 보험 또는 공제가입

-----.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보험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자보
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
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
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
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
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
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
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생략)

제18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
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
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
괄 신청하여야 한다.

2. ----- 자원
봉사자의 ----- 공제료를
센터에 -----.

3. -----
----- 따른 등록단체의 소
속 자원봉사자의 -----

----- 자원봉사자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실비지급) -----
----- 자원봉사자에
게 -----
-----.

제1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
에 -----
-----.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1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주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전공단원 등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을 겸임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 ③ 반주자는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 ④ 단무장은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 한다.
- ⑤ 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 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전공단원은 음악 및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일반단원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에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은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 할 수 있다.
-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서 공연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연속 3회 연습에 불참하거나,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복무)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예산) 시장은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징수) ① 합창단의 공연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외부출연)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의 선발계획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장료 징수 기준표(제12조 관련)

구 분	요 금	비 고
성 인	3,000	
학 생	1,000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2호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3호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방지하는데 있어”를 “방지하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재해 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상”을 “모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 침수 수위로서”를 “따른 침수 수위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이를 함께”를 “함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를 고시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중 “병행”을 각각 “함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의한 직·간접적인”을 “따른 직접·간접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행”을 “함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험지구”를 “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간접적인”을 “직접·간접적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u>위험지구</u>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자연재해 <u>위험지구</u>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u>방지하는데 있어</u>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 <u>위험지구</u>”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p>	<p>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u>위험개선지구</u>----- ----- ----- ----- ----- ----- -----.</p> <p>제2조(기본방향) ----- ----<u>위험개선지구</u>----- ----- ---- <u>방지하고,</u> ----- ----- ----- ----- ----- ----- -.</p> <p>제3조(정의) ----- ----- <u>뜻은</u> -----.</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p>

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2.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 그 밖에 -----

-----.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 모양 -----
-----.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4. -----

----- 따른 -----
----- 따른 침수 수위로써 -----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침수위험지구 등” 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6.·7. (생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5. -----

----- 등으로 -----

-----.

6.·7. (현행과 같음)

8. -----
----- 위험개선지구 -----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위험개선지구 -----

----- 함께 -----

하다.

제5조(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시장은 주민이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 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

----- 고시하여야
-----.

② -----
----위험개선지구-----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

-----.

1. -----

----- 함께-----
-----.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앞뒤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

2. -----
----- 함께-----

3. -----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1. -----

----- 따른 직접·간접
적인 -----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생략)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다.

2. -----

함께-----

--

3. -----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② ----- 직접·간접적인 -----

-----.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4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속차로”라 함은”을 ““변속차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라 함은”을 ““테이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을 ““부대시설”이란”으로, “가드레일”을 “보호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류화시설”이라 함은”을 ““도류화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군도 중 4차로”를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시·군도 중 2차로”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할”을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으로, “기타”를 “그밖”으로,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을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허가하여”를 “허가해”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6조제1항 중 “강도”를 “세기”로 한다.

제8조제4호 후단 중 “측구로”를 “옆도랑으로”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가드레일 기타”를 “보호난간 그 밖에”로, “공작물”을 “인공 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측구를”을 “옆도랑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설치하는”을 “설치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를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보호난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드레일”을 “보호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을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로, “있어서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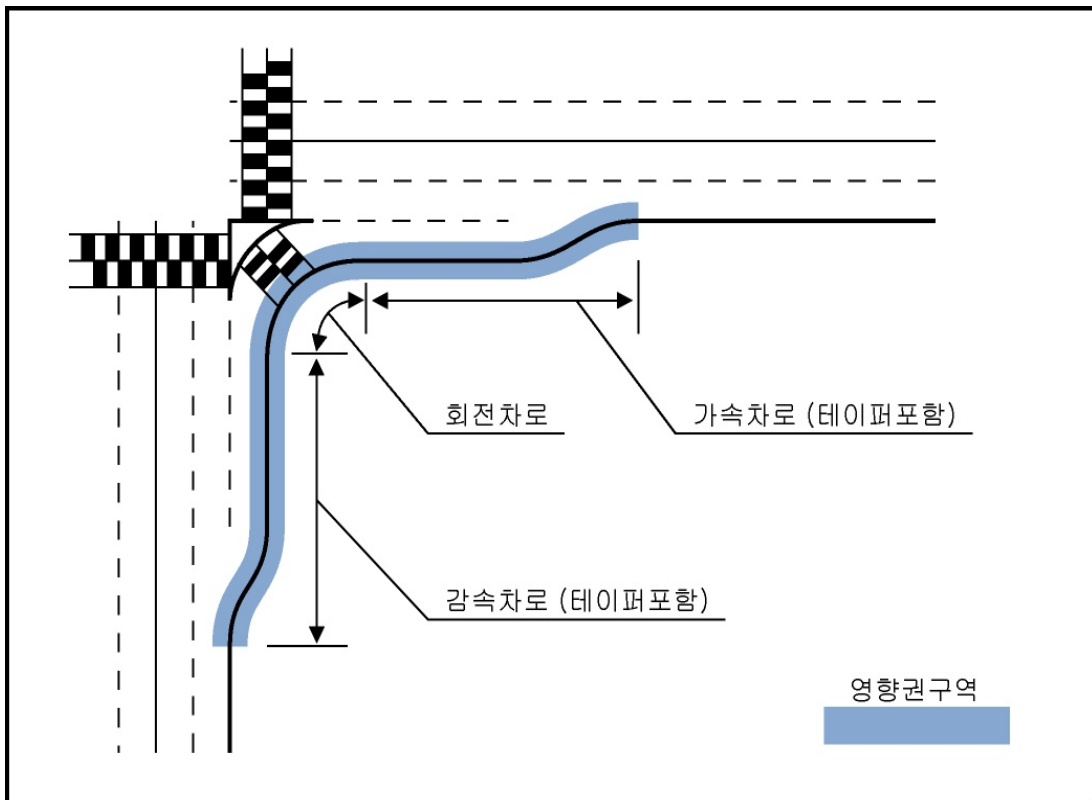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5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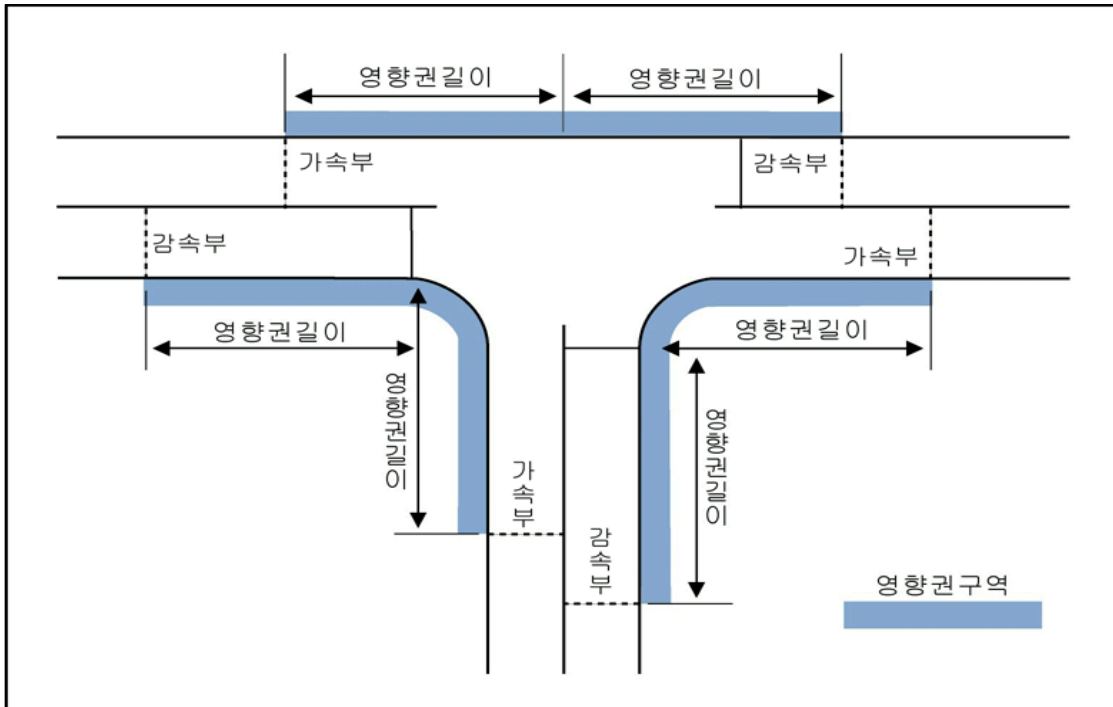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교차로 영향권 길이(미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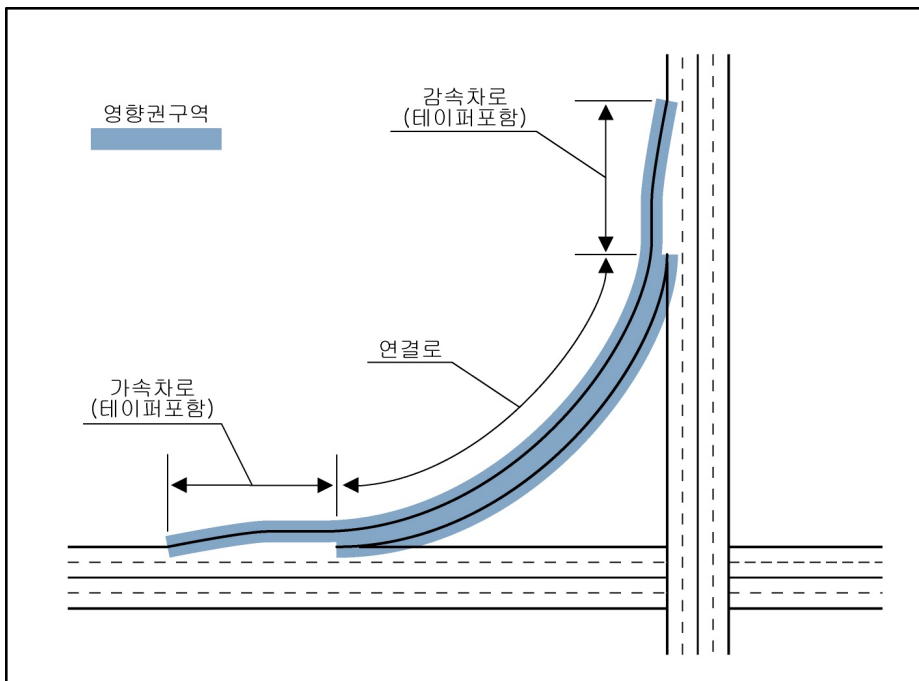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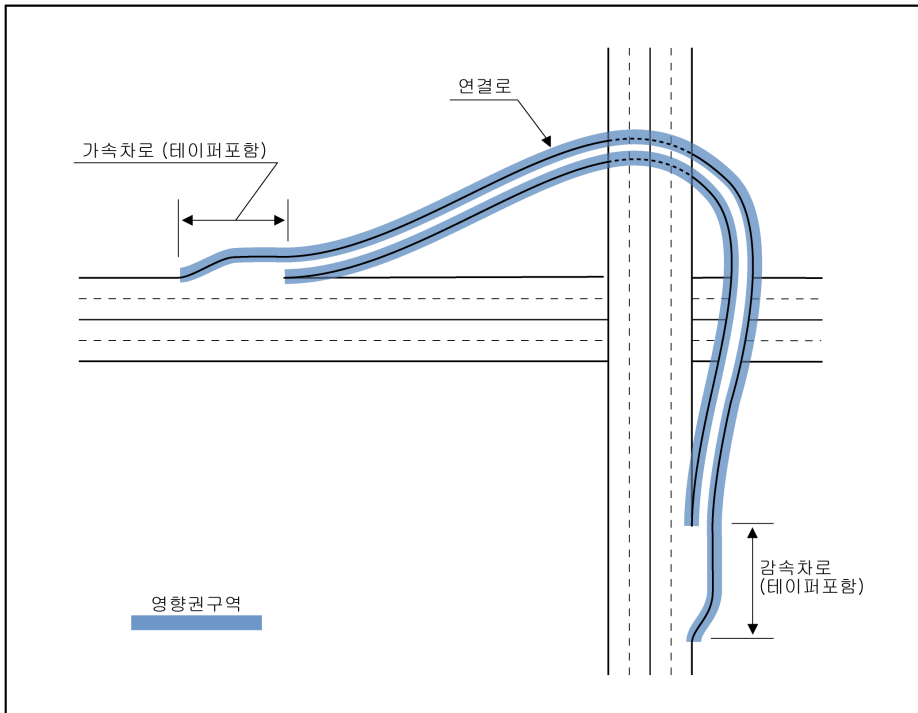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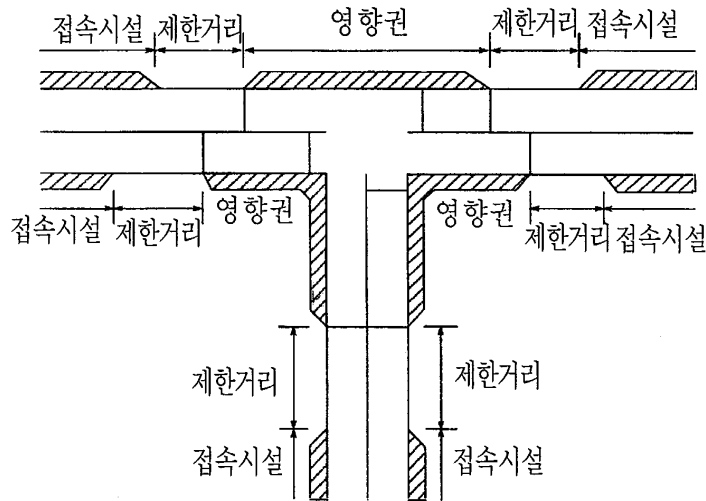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5조제4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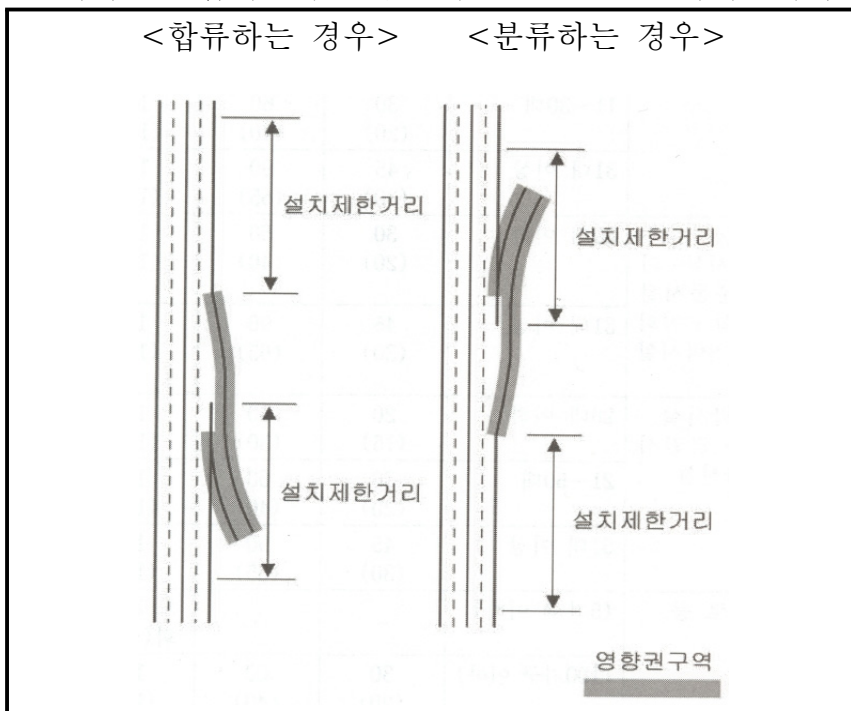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 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u>기타</u>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u>그 밖</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그 밖</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변속차로”</u> 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p> <p>2. <u>“테이퍼”</u> 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p> <p>3. <u>“부대시설”</u> 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p>	<p>제2조(정의) ----- ----- <u>뜻은</u> ----- -----.</p> <p>1. <u>“변속차로”</u> 란 ----- ----- ----- ----- -----.</p> <p>2. <u>“테이퍼”</u> 란 ----- ----- ----- ----- -----.</p> <p>3. <u>“부대시설”</u> 이란 ----- -----</p>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
한다.

4. “도류화시설” 이라 함은 차
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
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
·군도 중 4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
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
(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
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
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
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 보호난간

-----.

4. “도류화시설” 이란 -----

-----.

제3조(적용범위) -----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시·군
도 중 2차로-----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

----- 그밖-----

----- 다른 연결을 제외한다)하
는 경우에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붙여야 -----.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

-----.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대해서-
----- 허가해
-----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1. (현행과 같음)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 할 수 없는 구간

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신 설>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우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 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 세기-----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배수시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

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9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생략)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6. (생략)

----- . -----

----- 옆도랑으로 -----

제9조(분리대) -----

----- .

1. (현행과 같음)
2. ----- 보호난간 그 밖에 ----- 인공구조물 -----

3. (현행과 같음)
4. -----

옆도랑을 -----

5. 6. (현행과 같음)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0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3. (생략)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7. -----

----- 설치할 -----

제10조(변속차로 -----) -----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 변속차로

-----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
3. (현행과 같음)
4. -----
-- 보호난간 -----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1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
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
이나 부탈면의 지형조건에 부
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
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
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
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2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1조(부대시설) 변속차로-----

-----.

1. 보호난간 -----

2. 변속차로 등-----

제1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

----- 변속차로-----
-----.

제13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5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구역에서”를 “행정구역의”로, “대지에 대하여”를 “대지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 건축위원회”를 “공주시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산성·금성동”을 “산성동·금성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필요시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건축위원회는 타 지방자치단체 3개 이상, 타 위원회 6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때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⑧ 공주시 건축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0명 이내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
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
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
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
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5제1항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10조의 제목“(전문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
요하면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문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자료 제출 등)”을“(심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6조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제9조제7항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건축물의 유지·관리)”를“(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중 5층이상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용도에 한정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7의5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 영업장 면적이 500m² 이상인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것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500m² 이상인 것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전면도로”를 “앞면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면도로”를 “앞면도로”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8조 규정을”을 “제18조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믹서·호이스트”를 “혼합기·호이스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일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을 “저장창고·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하중이”를 “무게가”로 한다.

제37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방 건축위원회</p> <p>제5조(명칭)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 건축위원회는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p>	<p>제1조(목적)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 ----- ----- -----.</p> <p>제2조(적용 범위) ----- ----- 행정구역의 ----- ----- -- 대지에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주시 건축위원회</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 ----- ----- -----</p>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미관지구,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및 중동지구일반상업지역(산성·금성동을 포함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수시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산업국장이 된다.

----- 대해서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산성동·금성동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

1.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인사
발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한 위원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
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
원으로 부적당한 위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
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
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
다. 필요시 해당 심의에만 위원
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
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심의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건축위원회는 타 지방
자치단체 3개 이상, 타 위원회
6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때에는 임명
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⑧ 공주시 건축위원으로 위촉되
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
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심의안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신설>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0명 이내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신 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이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
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
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친 것으로 본다.

④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의2(심의 생략)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
항

2. 영 제5조5제1항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10조(소위원회) ① -----

----- 공주시 건축위
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 소
위원회 -----
-----.

③ 소위원회-----

-----.

④ -----
----- 소위원회-----
-----.

제11조(회의록)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제6조1항

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제9조제7항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

2. ~ 4. (생략)

③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
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를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다중이
용 건축물로 한다.

1. -----
----- 하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영제23조의2제1항제3
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용도 중 5층 이상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용도에 한정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7의5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것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것

<신 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6분의 1이상이 접하는 대지만 해당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다)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4조(이행강제금의 산정) ①

(생략)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 「질서위반행위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

----- 앞면도로

----- 대
해서-----
-----.

② -----

----- 앞면도
로-----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이행강제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p>규제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p>	<p>----- 제18조를 -----.</p>
<p>제35조(공작물의 준용) (생략)</p> <p>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p> <p>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p> <p>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u>하중이</u> 10톤 이상인 것</p>	<p>제35조(공작물의 준용) (현행과 같음)</p> <p>1. ----- <u>혼합기·호이스트</u>----- -----</p> <p>2. ----- <u>저장창고·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u> ----- -----</p> <p>3. ----- ----- <u>무게가</u> ----- -----</p>
<p>제37조(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7조(시행규칙) -- <u>조례의</u> ----- ----- -----.</p>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6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의당로 114-6(금흥동 418) 일원에 두며 “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p>	<p>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번지, 산성동 174-37번지,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산성동 195-7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31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 일원에 두며 “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p>

공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0. 21)에서 의결된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조례 제897호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맛나루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개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2. “입점업체”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공예품 등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판매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는 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장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www.gmjangter.com>" 으로 한다.

제5조(장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장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판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6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주문접수, 상품포장,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

③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등으로 상품 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한 날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터 운영 책무) ① 장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장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제8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터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판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판매 수수료) 시장은 판매대금의 5%(결제수수료 포함)를 판매수수료로 정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 변동요인 발생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 관리) ① 시장은 장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장터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업무담당실무자로 한다.

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관리하게 한다.

제11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장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시장은 고맛나루장터 입점자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입점자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 입점자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벤치마킹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이용하는 홍보 마케팅
4. 웹투어를 이용하는 홍보 마케팅
5. 사이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입점상품의 일부를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홍보

② 홍보 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비용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배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자 배치) 시장은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50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조(「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의 개정)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3조(「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의 개정)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공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의 개정) 공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을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로 한다.

제6조(「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별표 7”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로 한다.

제8조(「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1조(「공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4항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3조(「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에 따라”로 한다.

제15조(「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7호”를 “제8조제7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4호”를 “제8조제14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3조제2항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를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2조제1항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 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	제1조(목적) ----- -----

<p>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 ----- ----- ----- ----- ----- ----- -----</p>
---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인사담당관) ① (생략)</p> <p>② 인사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후생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지속적인 특별사법경찰활동으로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0.26. 2013.7.15.]</p> <p>1. ~ 7. (생략)</p>	<p>제7조(인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8. 「 <u>사무관리규정</u> 」에 관한 사항	8.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
9. ~ 25. (생략)	9. ~ 25. (현행과 같음)

공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 <u>모범공무원 규정</u> 」 제8조의2-----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조(목적) -----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11. (생략)</p>	<p>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 ----- ----- ----- ----- ----- ----- ----- ----- ----- ----- -----.</p> <p>11. (현행과 같음)</p>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판기 설치 신청) 자판기</p>	<p>제2조(자판기 설치 신청) -----</p>

<p>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은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담배자판기 설치 지정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 ----- ----- ----- -----.</p>
--	--

공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 ----- 제8조제4항 ----- ----- ----- ----- ----- ----- ----- ----- -----.</p>

② ~ ④ (생략)

제5조(등록) 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요금기준 및 요금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 ①-----

----- 제8조 제4항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운임의 신고 등)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

-----.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
----- 제58조에 따른 -----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중수도의 관리) 조례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중수도 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 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장부의 종류) 공기업의 회 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p> <p>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 카. (생 략) 2. (생 략)</p>	<p>제10조(장부의 종류) ----- -----.</p> <p>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 2조에 따른 ---- 가.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만 하며,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신청대상자) ① ----- -----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에 따라 ----- ----- ----- -----.</p> <p>② (현행과 같음)</p>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무료관람) ①조례 제6조제7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p>	<p>제2조(무료관람) ①----- 제8조제7호----- ----- -----</p>

한다.

1. ~ 3. (생략)

②조례 제6조제14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제3조(관람권) ①조례 제8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재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재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13조 제2항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날 징수만료시각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 관광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제14호----- “그
밖에 -----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관람권) ① ----- 제9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입금 처리) -----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

-----.

<p>경영사업소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p>	<p>----- ----- ----- -----.</p>
--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 2인으로 한다.</p>	<p>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 제9조에 따른 ----- 2명-----.</p>
<p>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 ① (생략) ②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자료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에 따른 -----.</p>
<p>제7조(자료의 기증·기탁)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 ④ (생략)</p>	<p>제7조(자료의 기증·기탁) ① --- 제14조에 따라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21호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허가의 제한) ①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무여행 허가를 제한 한다.(단,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출장은 제외한다.)
-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라 교육시간 미 이수자에게는 교육시간 충족시까지 공무국외 여행허가를 제한 한다.(단,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 출장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허가의 제한) ① 지방 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무여행 허가를 제한 한다.(단,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출장은 제외한다.)</u></p> <p><u>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라 교육시간 미 이수자에게는 교육시간 충족시까지 공무국외 여행허가를 제한 한다.(단,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 출장은 제외한다)</u></p>

공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22호

공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미리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공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을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4.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 동장 등을 말한다.
5.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6.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7.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8.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 면장, 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 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행정규칙 제정·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 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담당관·과장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으로 10명 내외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 ⑤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청백-e 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청백-e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용 총괄 관리
-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 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정보화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윤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내부 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 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 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

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한차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성과금·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23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을 “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3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공주시가로등·보안등설치및관리규정」의 개정) 공주시가로등·보안등설치및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을 “「도로법」 제8조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

제3조 (「공주시 수렵장 관리 규정」의 개정) 공주시 수렵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의 개정)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조제9항에 의한”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제6조제1항 중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4조제2항”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생략)</p> <p>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해서는 <u>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u>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u>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u></p> <p>5.·6. (생략)</p>	<p>제22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u> ----- -----.</p> <p>제30조(준용)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u></p> <p>5.·6.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수렵장 관리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렵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p>	<p>제1조(목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p>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공주시가로등·보안등설치및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가로등 이라 함은 <u>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에 설치한 등</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u>도로법</u> 」 제8조 및 「 <u>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u> 」 제9조에 따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업무분담) ①가로등·보안등의 설치와 가로등 유지보수는 <u>건설과장</u> , 보안등의 유지보수는 읍·면·동장이 책임관리한다.	제3조(업무분담) ①----- ----- <u>교통과장</u> ----- ----- -.
②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가로등 신설 및 철거시에는 반드시 <u>건설과장</u> 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u>교통과장</u> -----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발사업) <u>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조제9항에 의한</u>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p> <p>1. (생략)</p> <p>2. 제1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u>환경정책기본법</u>」에 의한 <u>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u>」에 의한 평가 대상사업</p>	<p>제5조(개발사업) 「<u>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u>」 제27 조에 따른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호 이외의 사업으로써 「<u>환경영향평가법</u>」 제2조제4호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u></p>
<p>제6조(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p> <p>① <u>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4조제2항</u>에 따라 시장은 개발부하량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p> <p>① 「<u>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u>」 제14조제2항----- ----- -----.</p> <p>② (현행과 같음)</p>

공주시 행정 간행물 발간·등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예규 제224호

공주시 행정 간행물 발간·등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행정 간행물 발간·등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 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11월 1일

공주시 예규 제225호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 폐지지침**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3-105호(2013.09.02.)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검상농공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7,247	감) 0.3	397,246.7	
기	준 공 단 지	298,533.0	-	298,533.0	
솔	브 레 인	85,151.9	-	85,151.9	'1382 준공
아	세 아 산 업 개 발 (주)	13,562.1	감) 0.3	13,561.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검상농공단지로 지정변경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가. 상 호 : 아세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서효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2. 아세아빌딩 2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 2007년 ~ 2013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나. 배치계획 : 당초 12,741.1m² → 변경 12,740.9m²(감 0.2m²)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7,247.0	감) 0.3	397,246.7	100.0	
산업시설용지	320,323.4	감) 0.2	320,323.2	80.6	
지원시설용지	20,166.3	-	20,166.3	5.1	
공공시설용지	50,417.3	-	50,417.3	12.7	
도로	31,033.5	-	31,033.5	7.8	
주차장	2,039.8	-	2,039.8	0.5	
관리사무소	6,087.1	-	6,087.1	1.6	
오·폐수처리장	9,124.0	-	9,124.0	2.3	
배수지	2,132.9	-	2,132.9	0.5	
녹지시설용지	6,340.0	감) 0.1	6,339.9	1.6	
완충녹지	6,340.0	감) 0.1	6,339.9	1.6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 없음)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중로	7	2,684	31,033.5	-	-	-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나. 공간시설계획 (변경)

1)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340	-	6,339.9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신설	26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174번지 일원	821.0	감)0.1	820.9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26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1)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라. 방재시설계획 (변경 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3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오·폐수 처리 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량(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539.1	539.1	-	
공업용수	453.0	453.0	-	
생활용수	86.1	86.1	-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수량(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95.6	195.6	-	
공업폐수	178.1	178.1	-	
생활오수	17.5	17.5	-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0,145.2	20,145.2	-	
생산시설	20,031.0	20,031.0	-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114.2	114.2	-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736	1,736	-	
산업시설	1,447	1,447	-	
공중전화	289	289	-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573	2,573	-	
생산시설	2,573	2,573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검상 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상 호 : 아세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서효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2. 아세아빌딩 2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개요

○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나. 면적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7,247	감) 0.3	397,246.7	
기	준 공 단 지	298,533.0	-	298,533.0	
솔	브 레 인	85,151.9	-	85,151.9	'13 8 2 준공
아	세 아 산 업 개 발 (주)	13,562.1	감) 0.3	13,561.8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3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7,324.9	감) 0.3	397,246.7	100.0	
공업지역	397,247	-	397,246.7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2,114.0	-	22,114.0	-	
준 공업지역	375,133.0	감) 0.3	375,132.7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없음)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중로	7	2,684	31,033.5	-	-	-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태	주 요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나) 주차장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2) 공간시설계획 (변경)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340	-	6,339.9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신설	26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174번지 일원	821.0	감)0.1	820.9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26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4) 방재시설계획 (변경 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3	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오·폐수 처리 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주 23 24	검 상 농 공 단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공주시 검상동 · 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397,247.0	감) 0.3	397,246.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개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위 치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20,323.4	320,323.2		320,323.4	감) 0.2	320,323.2	
①	-	255,418.5	255,418.5	공주시 검상동 725-9번지 일원	255,418.5		255,418.5	
	2-1	52,163.8	52,163.8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299-1번지 일원	30,953.1		30,953.1	
	2-2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21,210.7		21,210.7	
	3-1	12,741.1	12,740.9	공주시 검상동 173번지 일원	12,741.1	감) 0.2	12,740.9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0,166.3		20,166.3	-	20,166.3	
③	1	20,166.3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20,166.3	-	20,166.3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383.8		19,383.8	-	19,383.8	
②	2	6,087.1	공주시 검상동 729-5번지	6,087.1	-	6,087.1	관리사무소
	3	9,124.0	공주시 검상동 726-3번지	9,124.0	-	9,124.0	오폐수처리장
	4	2,132.9	공주시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배수지
	11	2,039.8	공주시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주차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용지 ①-1	검상동 725-10번지 일원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2-1	검상농공단지 검상동 298-3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4층(20m)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①-2-2 ①-3-1	검상농공단지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③-1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다) 공공시설용지 - 관리사무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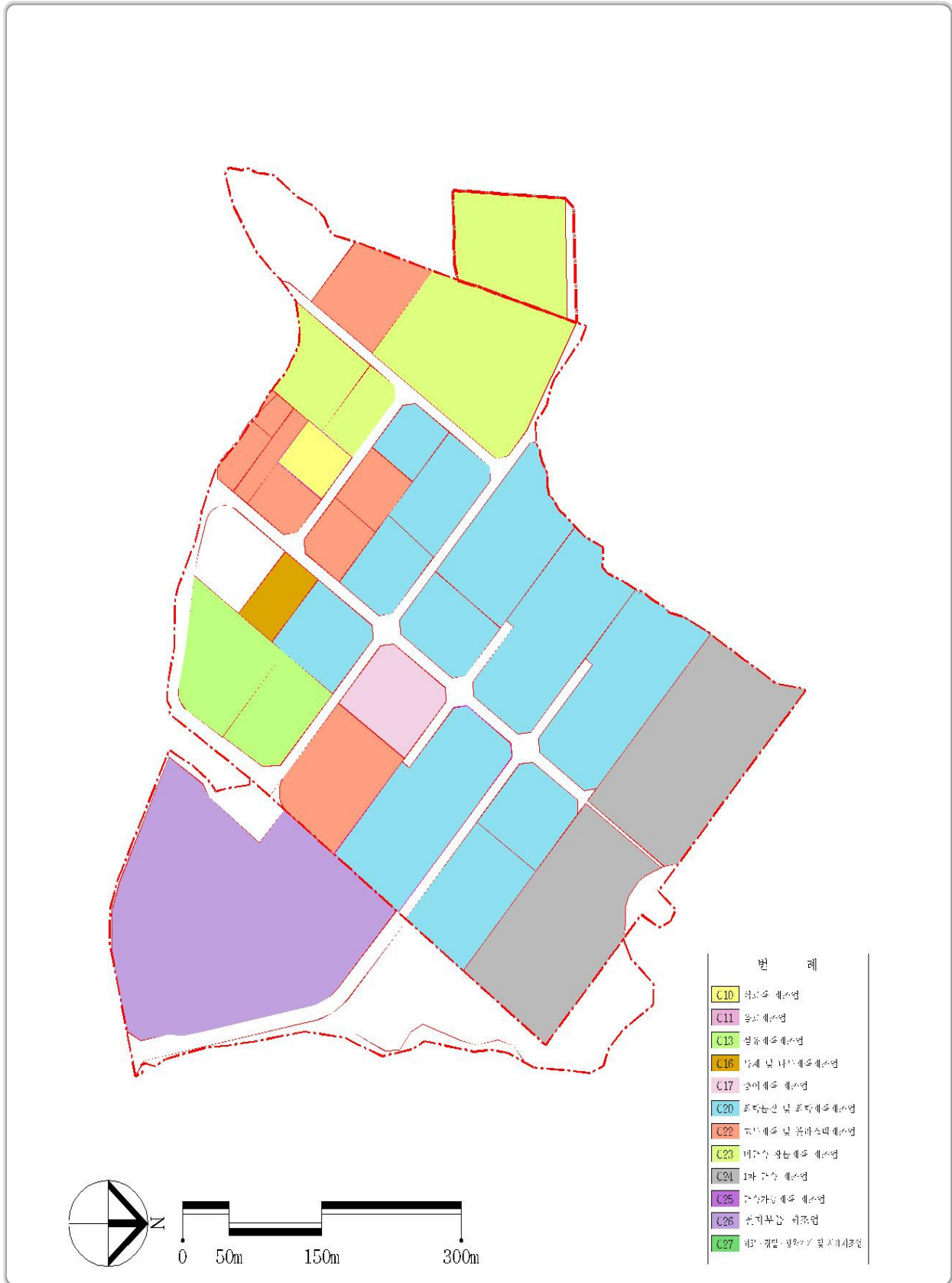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②-2	검상동 729-5번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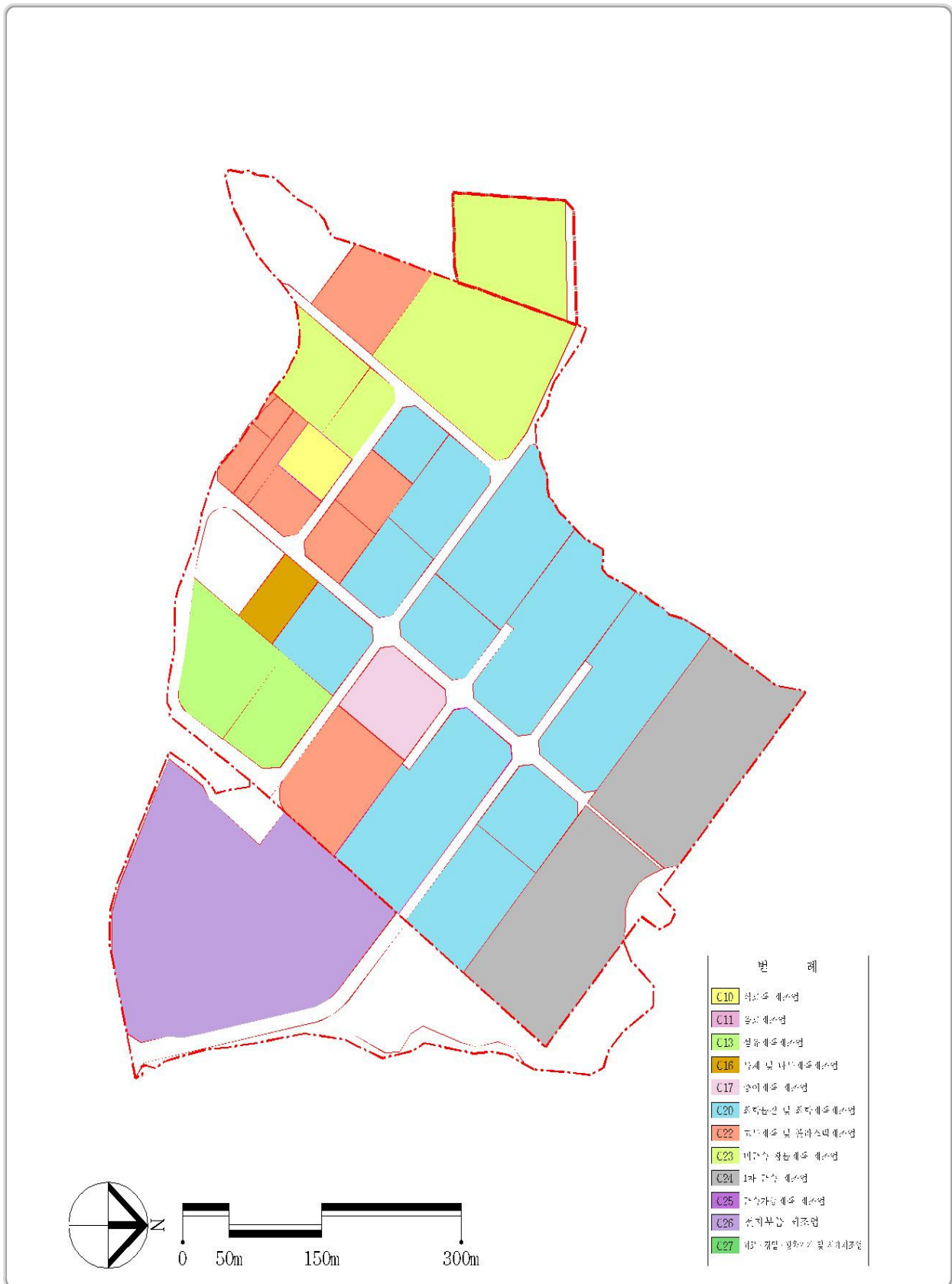
가) 교통처리계획 - 계재생략

< 별첨 1 >

<업종별 배치 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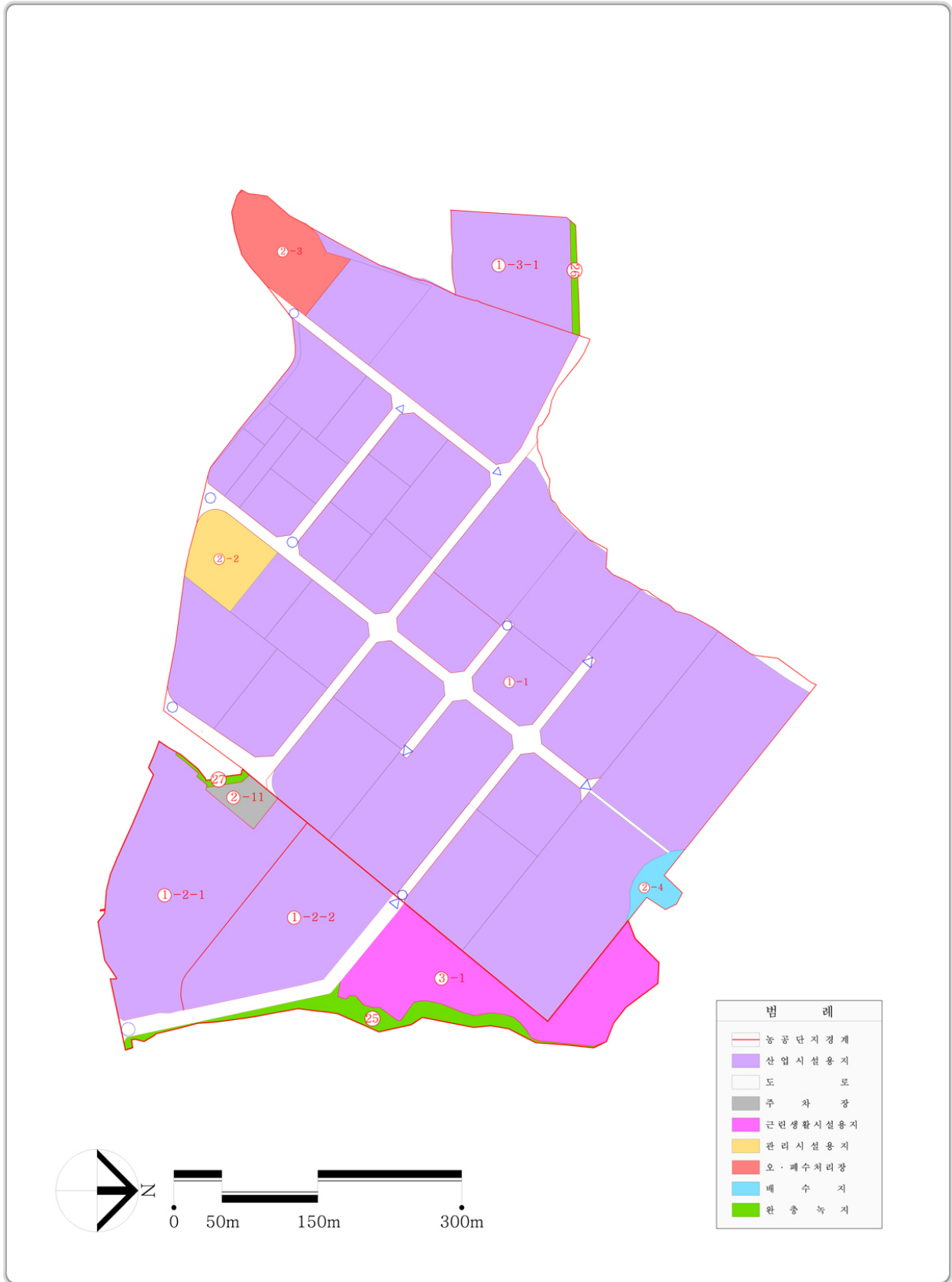


<업종별배치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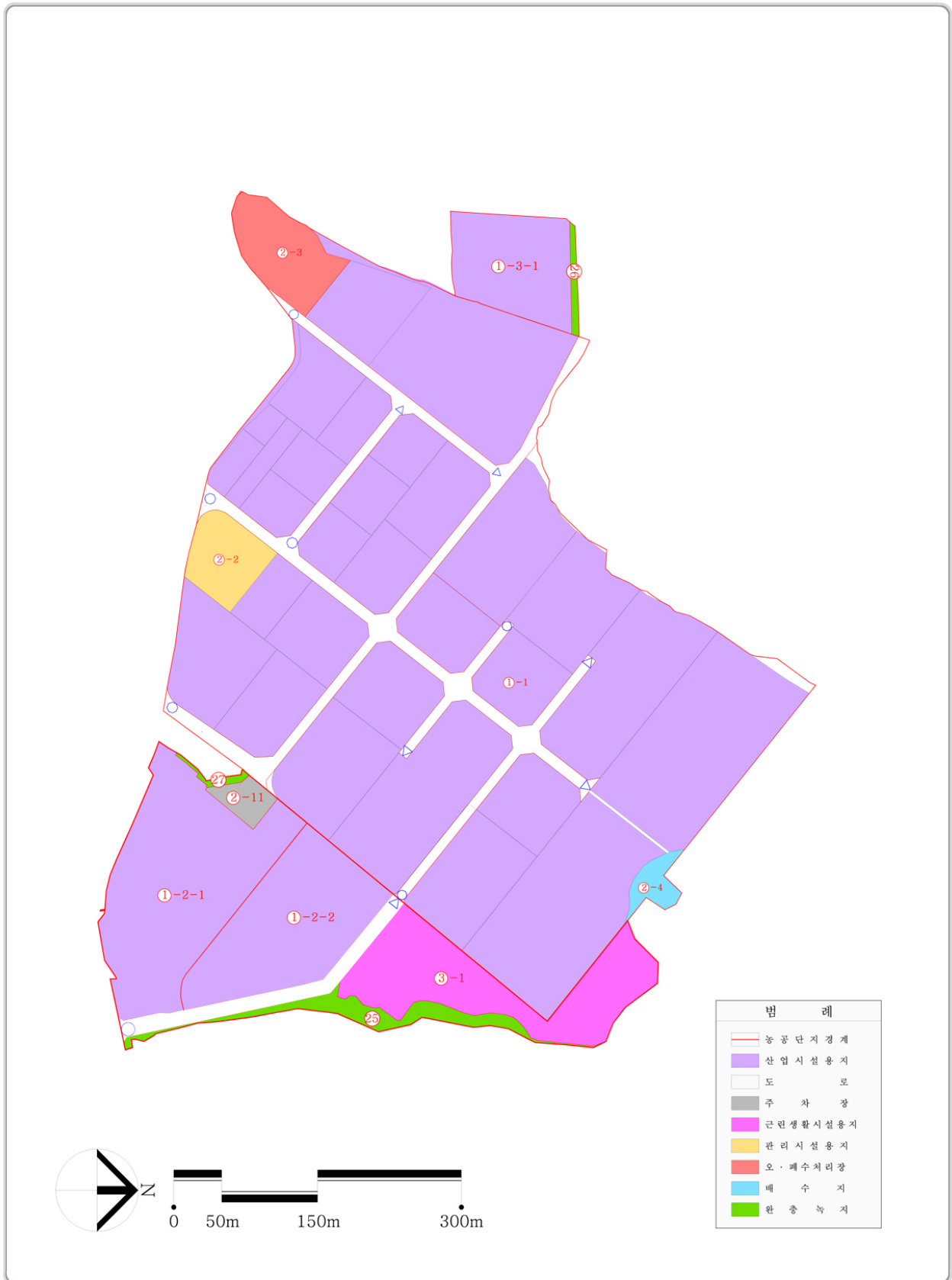


<별첨 2>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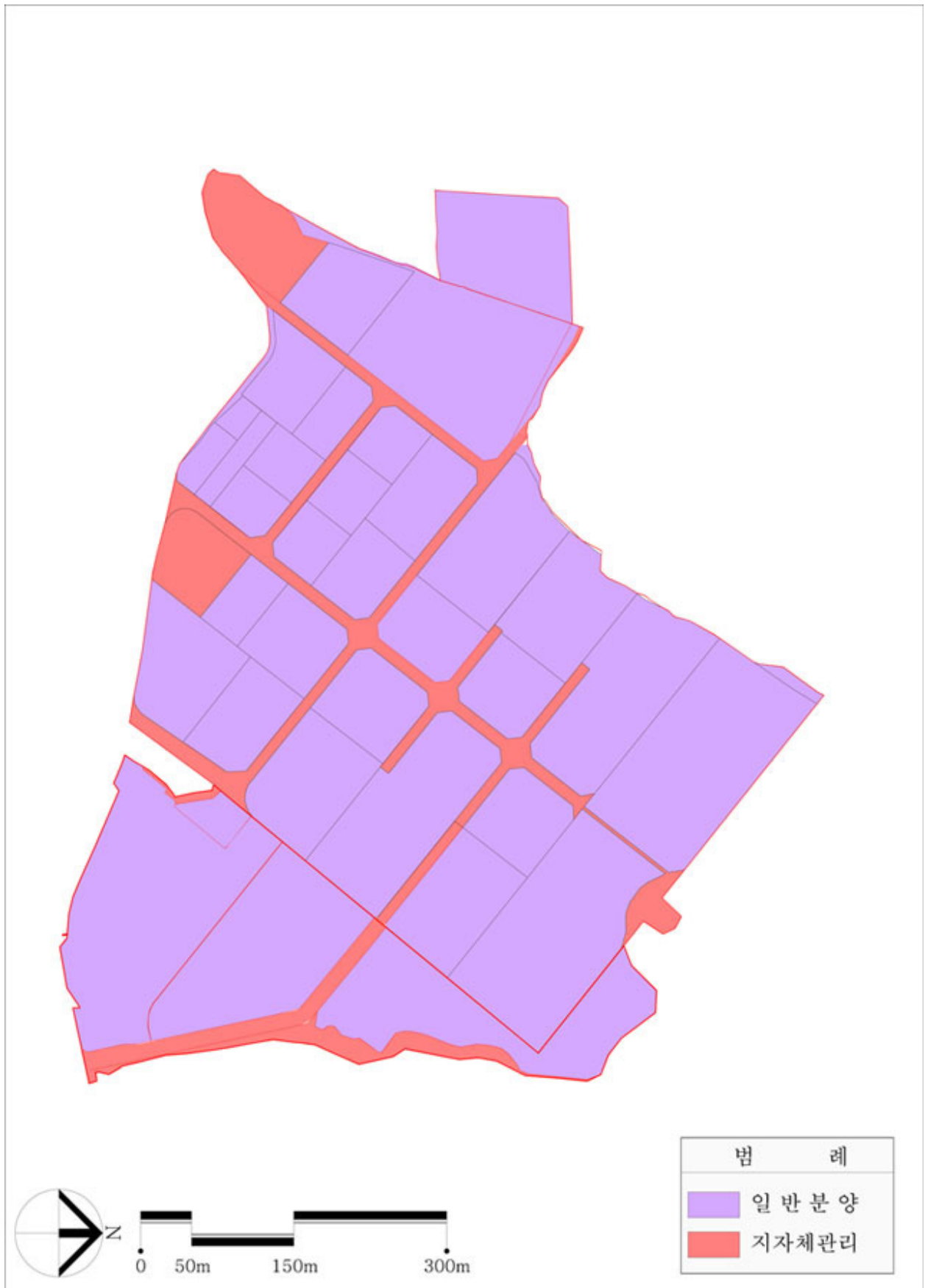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별첨 3 >

< 관리처분계획도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공 주 시 장

1. 고시일자 : 2013. 10. 23.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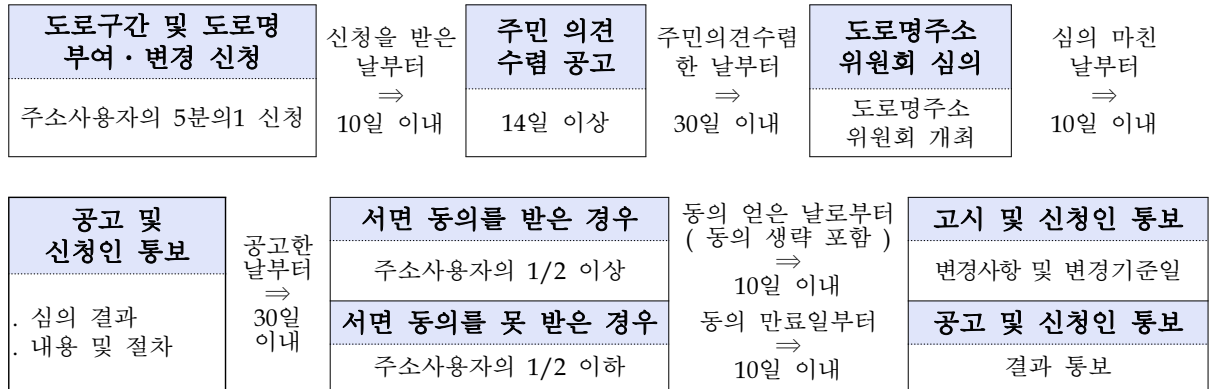
■ 신규 부여조서

내용	도로명	연장(m)	폭(m)	도로구간		관할 행정 구역	기초 간격(m)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기 점	종 점				
신규부여	월미농공단지길	675	15	월미동 381-3	월미동 450	월미동	20	월미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 부여	
신규부여	탄천산업단지길	1,900	20	탄천면 안영리 174-15	탄천면 안영리 170-1	탄천면	20	탄천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 부여	

■ 도로구간 변경조서

내용	도로명	연장(m)		폭(m)	도로구간				관할 행정 구역	기초번호		기초 간격(m)	구간변경사유	비고
		전	후		기 점		종 점			변경 전	변경 후			
					전	후	전	후						
구간변경	탐성골길	1,805	800	3	탄천면 안영리 394-1	탄천면 안영리 394-1	탄천면 안영리 59-6	탄천면 안영리 765-2	탄천면 안영리	1~182	1~82	20	단지준공관련구간변경	
	책골길	1,272	620	4	탄천면 덕지리 632-10	탄천면 덕지리 산 54-4	탄천면 덕지리 323-2	탄천면 덕지리 323-2	탄천면 덕지리	1~128	65~128	20		
	만마름길	3,041	3,041	7	탄천면 장선리 459	탄천면 장선리 459	탄천면 덕지리 558-6	탄천면 덕지리 558-6	탄천면	1~306	1~306	20		

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절차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 새주소담당(☎840-8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고시 제2013 - 1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의당면 청룡리 22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부지 내 「골드리버 CC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재생과(☎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0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2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 명 칭 : 골드리버CC 확장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도로:내부도로)	175,819 (소로3-14호 선형변경)	○ 골드리버CC 확장공사 1식 (세부내용 공람도서 참조) -골프장 증설 : 6홀→9홀, 내부도로 개설 -소로3-14(중복결정) 개설 : 167m(B=4m) ※1단계 변경 및 2단계사업 포함

라. 사업시행자 : (주)웅진 대표 권영기

마. 사업기간 : 2012. 02. 15(인가일) ~ 2013.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비 고
1	청룡리	200	-	체	73	73	주식회사 웅진	
2	청룡리	200	2	체	7	7	주식회사 웅진	
3	청룡리	201	1	체	16	16	주식회사 웅진	
4	청룡리	220	2	체	7,094	7,094	주식회사 웅진	
5	청룡리	220	3	체	365	365	주식회사 웅진	
6	청룡리	220	8	체	3,300	3,300	주식회사 웅진	
7	청룡리	221	2	체	113,555	113,555	주식회사 웅진	
8	청룡리	225	-	체	7,156	7,156	주식회사 웅진	
9	청룡리	233	1	체	524	524	주식회사 웅진	
10	청룡리	234	1	전	84	84	김종숙	
11	청룡리	219	4	답	25	25	이정숙	
12	청룡리	219	1	답	1,512	1,512	이정숙	
13	청룡리	220	9	답	293	293	주식회사 웅진	
14	청룡리	산43	-	임	16,102	16,102	주식회사 웅진	
15	청룡리	221	3	임	5,089	5,089	주식회사 웅진	
16	청룡리	221	4	임	5,750	5,750	주식회사 웅진	
17	청룡리	221	5	임	5,345	5,345	주식회사 웅진	
18	청룡리	221	6	임	1,595	1,595	주식회사 웅진	
19	청룡리	225	2	임	5,093	5,093	주식회사 웅진	
20	청룡리	225	3	임	381	381	주식회사 웅진	
21	청룡리	684	-	구	3,847	1,967	국(농수산부)	
22	청룡리	685	-	구	1,153	450	국(농수산부)	
23	청룡리	699	-	도	543	42	국(건설부)	
24	청룡리	700	-	도	1,134	1	국(건설부)	
소 계					180,036	175,819		

사.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체육시설	골프장	의당면 청룡리 221-1	175,819	-	175,819	'08.10.20 (공주시 제2008-67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세부조성계획의 변경 : 게재생략

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14	4	국지 도로	167	청룡리 821	청룡리 산45	일반 도로	-	'12. 4. 2. (공주시 제2012-31호)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자.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4	소로3-14	◦변경 - 폭원 4m, 연장 167m - 선형변경	◦ 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재분양 공고

공주시에서 조성·분양중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분양 공고합니다.

2013. 11. 01.

공 주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 단 지 명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 면 적 : 95,910.9㎡ (산업단지 87,789.8㎡, 신국도32호 8,121.1㎡)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공영개발)

2. 금회분양대상 (잔여필지)

위 치	용 도	필지수	분양면적 (㎡)	평균분양 예정가격	분양방법
유구읍 백교리 일원	산업시설용지	7블록	22,058.1	68,534원/㎡ (필지별 차등적용)	일반분양

3. 공고기간 : 2013. 11. 01. ~ 2013. 11. 15.(15일간)

4. 신청서 접수 및 입주일정

- 신청기간 : 2013. 11. 01부터
-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아래 제출서류를 공주시청 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등록공장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관할세무서가 확인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용도:용지매입신청용) 1부.
- 접수 및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8)
- 입주자격심사, 입주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기타 일정은 입주신청 업체에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입주대상업종 (현재 입주완료된 획지는 제외)

구 분	면 적(㎡)	업체수	비 고
합 계	22,058.1	7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제조업에 한함)	4,203.3	2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제조업에 한함) 32. 가구제조업	17,854.8	5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 관련 업종은 불허

6. 입주제한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규정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7. 입주자격

- 공고 당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8. 입주우선순위

- (1)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한 업체
- (2)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 (3) 전국에 소재한 업체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5) 기타 권장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지역주민 우선고용,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수출 등 유망중소기업,재무구조 건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동일업종의 경우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9.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비 율	납 부 시 기	납 부 방 법
계 약 금	10%	분양계약일	고지서 납부 (납부처 - 전국 우체국, 농협 및 공주시 관내 금융기관)
중 도 금	40%	분양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잔 금	50%	착공시 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하며, 납부기간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의거 연체료 부과(연12%~연15%)

10. 세제 혜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조세 감면

※ 위 사항은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되며 재정여건 및 세제 변동시 조정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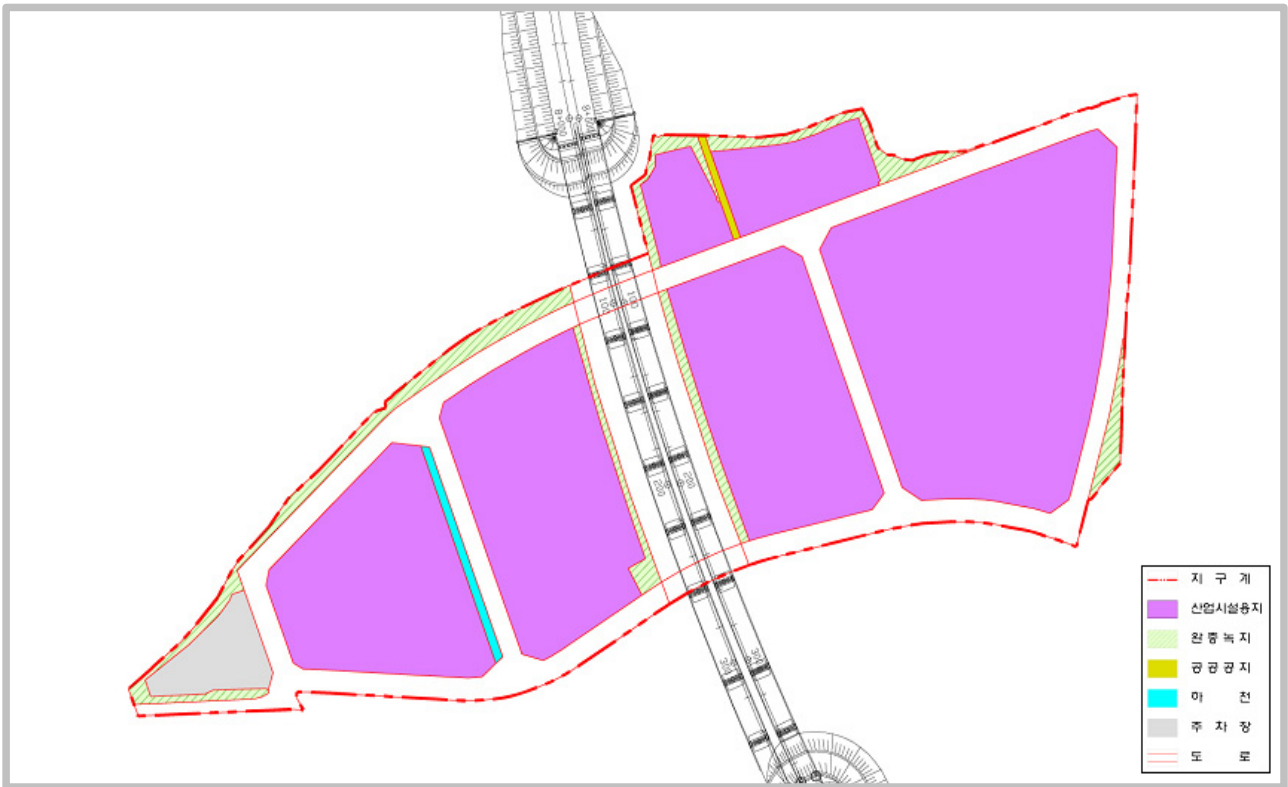
- 입주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때 또는 계약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 입주계약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입주계약 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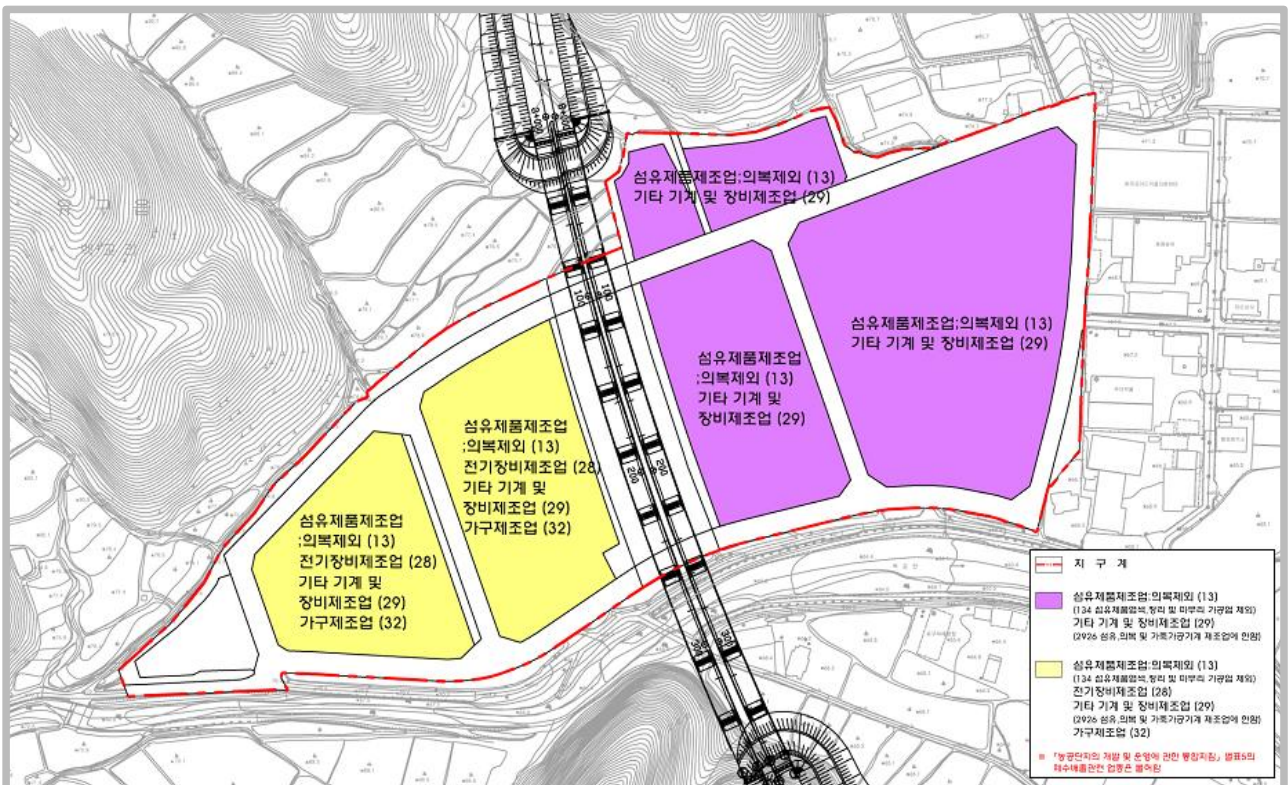
- 공장을 건축 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한 자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 공장정상 가동 중 공장을 부득이 매도하게 되는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공주시에 귀속됨
- 「공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건축물의 착공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에 의거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청전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사항,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 분양계약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분양받은 후에 처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의 양도·처분할 수 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도 및 제출서류는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참조 (공주시청 홈페이지 ☞ www.gongju.go.kr)
- 본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분양계획은 공주시 경제과에 비치하고 게재 생략하며, 분양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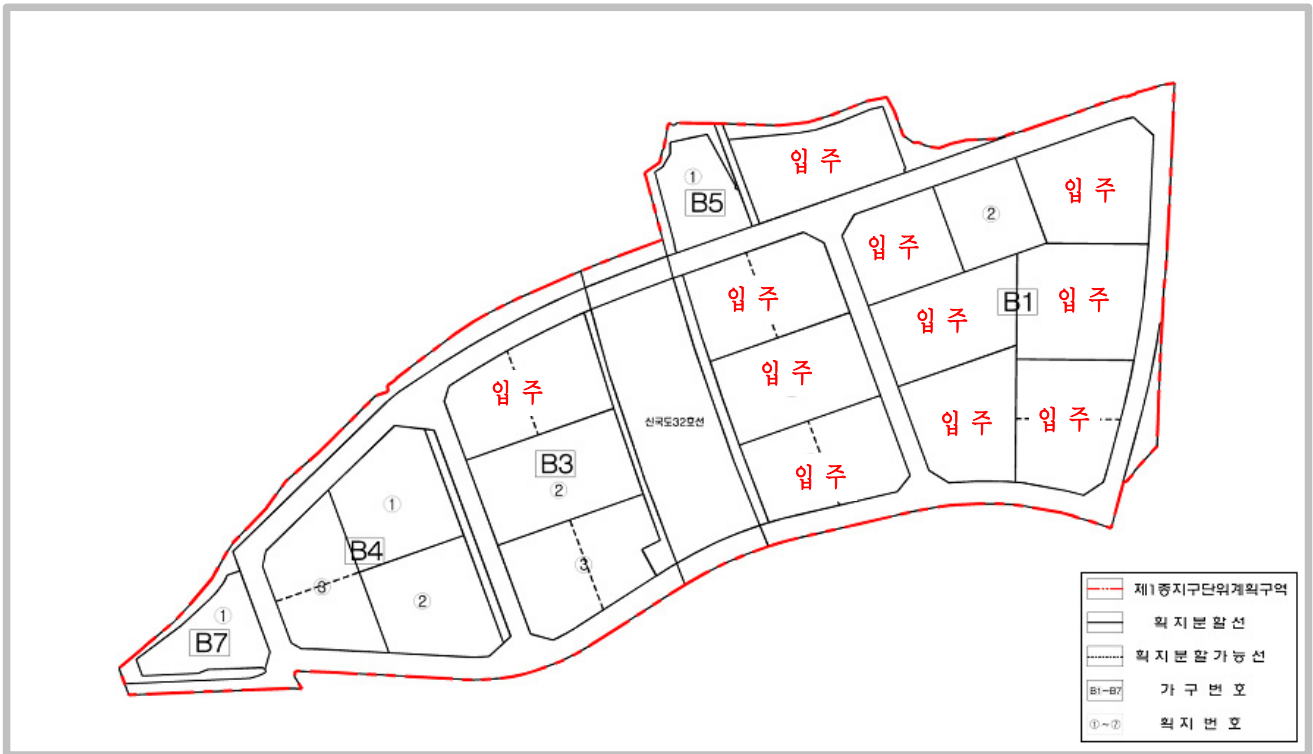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



< 업종별 배치계획도 >



< 가구 및 획지계획도 >



소하천 폐지에 관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폐지하고자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1. 의견을 듣고자하는 목적

- 송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존을 위해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소하천 폐지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내역

소하천명	구 간		유역면적	유로연장	수 계	비 고
	시 점	종 점				
선유천	송선동 320	송선동 387	0.41km ²	1.105km	중산천	폐지

※ 변경·폐지사유 : 유로의 85%가 송선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지정기준 미달

3. 공람기간 : 2013. 11. 1. ~ 11. 14.(14일간)

4. 공람장소 : 공주시 안전관리과, 월송동사무소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 제출장소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041-840-8668)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